



# 프랑스 HADOPI, 2022년 1월부터 통합 규제기관인 ARCOM으로 출범

김태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불민사법학회 간사

1. 들어가며
2. ARCOM의 출범
3. ARCOM의 구성
4. ARCOM의 역할
5. ARCOM의 당면 과제 및 시사점

## 1. 들어가며

2009년 11월, 일명 HADOPI 법률<sup>1)</sup>이 발효되고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 즉 HADOPI<sup>2)</sup>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DSM 지침)의 이행을 위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통신 및 문화 주권 법안'<sup>3)</sup>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시청각 저작물과 디지털 통신으로 분리되어 있던 불법 복제 방지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뿐만이 아닌 스트리밍과 직접 다운로드를 통한 불법이용에도 규제범위를 확장시키게 되었다. 이 법안에서 HADOPI는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와 통합하여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이하, ARCOM)이라는 새로운 규제기관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 1) 인터넷상 창작물 배포 및 보호 활성화를 위한 법률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 2)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영문 공식 명칭은 The High Authority for the dissemination of works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on the internet is an independent public authority 임.
- 3)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 2. ARCOM의 출범

앞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 주권 법안'은 2020년 연말까지 Covid-19 라는 국가적 위기로 인해 심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국가 위기와 함께 시청각물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프랑스인의 문화 소비 습관에서 디지털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국의 디지털·시청각물 생태계와 규제방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전 법안의 다수 규정들이 다시 채택된 '디지털시대의 문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안'<sup>4)</sup>은 2021년 4월 8일에 상원에 제출되어 그 속행 절차(*procédure accélérée*)<sup>5)</sup>가 결정되었다. 본 법안은 국회의 제1독회<sup>6)</sup>와 양원 동수 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를 거쳐 9월 29일에 통과된 후, 프랑스 조직법전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헌법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21일 헌법위원회의 부분합치 판단을 받았다. 마침내 2021년 10월 26일,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법전의 제3편 제1장 제3절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 규제 기구인 ARCOM이 출범하게 되었다.

## 3. ARCOM의 구성

ARCOM은 기존 CSA의 구성원 300인에 HADOPI의 구성원 50인의 추가로 통합되었다. 또한 ARCOM의 합의부(*collège*)는 데크레에 따라 시청각 또는 전자 통신 분야에서 전문적 경험이 있고, 경제적, 법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9인의 위원(*conseiller*)으로 구성된다. ARCOM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Assemblée nationale*)의 의장이 지명한 3인, 상원 의장이 지명한 3인, 국사원의 부의장과 파기원장이 각각 국사원에서의 1인, 파기원에서의 1인을 지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022년부터 ARCOM을 이끌어 나갈 합의부의 위원은 기존 CSA의 합의부(*collège*) 7인<sup>7)</sup>에, 이전 HADOPI 위원이자 파기원에서 지명된 Laurence Pécaut-Rivolier, 그리고 이전 HADOPI 기관장이었으며 국사원에서 지명한 Denis Rapone 이며, 이들은 2021년 12월 17일자 데크레로 임명되었다.

4) Loi n° 2021-1382 du 25 octobre 2021 relative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œ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5)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양원 각 의회의 2회의 독회(*lecture*)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속행 절차가 결정되면 1독회만으로 양원 동수 합동 위원회가 성립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2항 참조)

6) 프랑스의 입법과정에서 법안이 작성된 후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양원이 각각의 심의를 거친 후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하여 전달 절차를 거친다. 이 때, 상·하원은 2회의 독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양원 동수 합동 위원회가 공동법안을 채택하거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하원에서 다시 독회를 거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1,2,4항 참조)

7) CSA의 합의부(*collège*)는 기관장과 6인의 의원(*conseiller*),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정치 생활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며, 그 직무가 종료되고 3년 동안 CSA의 관리 하에 있는 공·사기업에서 근무할 수 없다.

#### 4. ARCOM의 역할

ARCOM은 지금까지의 HADOPI와 CSA의 모든 임무를 위임받아 통신 규제의 중심 기관이 될 것이며, CSA가 맡았던 시청각물 규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중에 전달되는 모든 통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식재산법에서는 ARCOM의 주요 임무를 크게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①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보호하는 임무 ②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적법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합법 및 부정 이용을 감독하는 임무 ③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임무이다.(CPI. 제L.331-12조)

ARCOM의 공무원(agents)은 본 법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권리가 침해된 저작물에 접근한 공중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입수할 수 있으며 침해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취득한다거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관계인들을 소환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기록할 수 있다. (CPI. 제L.331-14조 이하)

더하여, 대중의 적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정 이용에 대한 기술을 조사하고, 적법사용에 대한 해결책 및 성과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CPI. 제L.331-17조 이하)

ARCOM은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 위반 사실이 접수된 경우, 가입자에게 의무 위반을 경고하고 권고를 발송할 수 있다. (CPI. 제L.331-19조 이하) 이러한 제재는 HADOPI의 '점진적 대응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ARCOM은 대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 자동화 처리를 구축을 승인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ARCOM은 사전 의결을 거쳐 이름과 침해 행위를 목록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및 소환에 관련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CPI. 제L.331-25조 이하)

또한, ARCOM은 긴급 심리 또는 신청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CPI. 제L.331-27조 이하) 이는 다른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는 등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우회하여 침해를 반복하는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다.

## 5. ARCOM의 당면 과제 및 시사점

2022년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ARCOM은 CSA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2021년 5월에 발표되었던 프랑스의 건설·통신·방송 회사 Bouygues 그룹의 미디어 자회사인 TF1 그룹과 M6 그룹의 합병 계획이다. 올해 11월 2일 CSA는 경쟁 당국(l'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았는데, ARCOM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이들의 합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실무자들로부터 설문을 받은 후 의견을 경쟁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10월 30일자 법률<sup>8)</sup> 제42-3조의 적용에 따라 직·간접적 지배가 변경되는 경우 C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M6 사의 채널은 공식적인 승인을 CSA에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CSA의 임무를 계승하게 될 ARCOM이 해당 사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승인은 2022년 하반기 중으로 경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ARCOM의 출범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 프랑스의 기술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도 규제기관을 재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알려진 영국의 통합 통신 규제 기관이다. 2002년 창설 당시 Ofcom은 5개의 규제기구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 기관은 프랑스의 ARCEP<sup>9)</sup>이 담당하는 통신규제와, CSA 담당(ARCOM 출범 전 기준)의 방송규제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규제 기관의 통합이 저작물의 모든 불법 이용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관의 유연한 통합은 새로운 시대 변화를 맞이하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9) 프랑스 우편·전자 통신 규제기관인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des postes et de la distribution de la presse)은 1997년 1월 5일, ART(통신규제기관)으로 처음 출범하였는데, 2005년에 제정된 우편 규제에 관한 법률(loi n° 2005-516 du 20 mai 2005 relative à la régulation des activités postales)에 의해 기관의 담당 기능이 우편 부문에까지 확장된 후 현재의 ARCEP이 되었다. 2012년에 CSA와 ARCEP의 통합 이슈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참고] 해당 법률안 통과로 개정된 지적재산권법 주요 조문  
(제3편 제1장 제3절의 제1부속절 ~ 제3부속절) 번역

제3편 제1장 제3절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이하, ARCOM)

제1부속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권한과 조직

제L.331-12조 ARCOM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온라인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전속하는 저작물과 대상을 보호할 임무.

모든 대중, 특히 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활동을 펼친다.

2. 온라인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 권리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적법 사용의 확대를 장려하고 합법 및 부정 이용을 감시하는 임무.

3.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임무.

이러한 임무의 일환으로, 기관은 특히 권고 사항, 모범 사례 지침, 표준 약관과 표본 그리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행동 규칙을 채택하고, 한편 지적재산권법 제L.331-20조의 보안 수단이 있음을 대중에 알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 권리의 침해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협정의 서명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기관은 체결된 협정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이들의 시행에 관련한 유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은 그러한 협정 및 제안의 결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협정 및 제안의 수행 또는 결과의 단계에서 직면하는 만일의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제L.331-13조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4조 제4항에 적용을 받아 지명된 기관의 구성원은 본 절의 제3부속절의 제1관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L.331-14조 I. ARCOM은 제L.331-12조에서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사원의 데크레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법 기관에 선서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공무원을 둔다. 이러한 승인은 법률에서 보호하는 기밀의 접근을 허가하는 절차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

II. ① 본 절의 제3부속절의 제1관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 I. 의 공무원은 제 L.331-19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당국에 들어온 신청을 수리한다.

② 이러한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 서비스 중개자에게 그들이 가진, 제1권 및 제2권에서 정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공연, 복제, 배포, 공중 송신의 목

적으로 이용했던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한 가입자의 신원,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를 입수할 수 있다.

III. ① 제L.331-25조 및 제L.331-27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RCOM의 (사법 기관에) 선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L.335-3조 및 제L.335-4조에서 정한 침해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온라인상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러한 범위 내에서, 기관의 선서하고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이러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 거래에 가명으로 참여
2.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상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의 복제
3. 이러한 방법으로 침해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상의 증거물을 추출 및 취득
4.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취득 및 연구

③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침해를 유발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④ 본 조 III. 의 공무원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제1호 ~ 제4호에 정하고 있는 권한의 요건을 보고하는 조서에 기록한다.

**제L.331-15조** ① 제L.331-14조에서의 (사법 기관에) 선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본 절의 제3부속절 제1관에서 정한 임무의 수행을 담당하는 ARCOM의 구성원은 제L.335-2조, 제L.335-3조, 제L.335-4조 및 제L.335-7-1조에서 정한 침해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온라인 상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또한, 이들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소환장에 기재된다.

③ 이들은 관계자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자를 소환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 청취를 요청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조력자에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소송법전 제28조에 따라,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했던 것이 의심되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전 제61-1조가 적용된다.

⑤ 신문 조서 사본은 관계자에게 교부된다.

**제L.331-16조** 안전에 관한 방침과 계획의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제17-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본 법전 제L.331-14조의 공무원의 승인 결정에는 그의 품행이 그들의 직무 또는 임무 수행과 상충되지 아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사가 선행된다.

**제2부속절 전자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및 대상의 적법 사용을 장려하고 합법 또는 부정 이용에 대하여 감시하는 임무**

제L.331-17조 ① ARCOM은 전자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대상의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 사용을 장려하고, 부정 이용 여부를 감시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대중에 대한 적법 사용의 가시성을 높이고 색인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며, 데크레에서 정한 목록의 지표를 매년 발표한다. ARCOM은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18조의 보고서에 적법 사용의 성과에 대해 작성한다.

② ARCOM은 전자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부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을 조사하고 연구한다. ARCOM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술한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보고서에 그 해결책을 제안한다.

제L.331-18조 I. ① ARCOM은 제L.137-1조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의 수준을, 배포 및 운용 조건을 포함하여 저작물과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에 비추어 평가한다. 당국은 요구되는 공개의 수준은 물론, 개선을 위한 권고를 공식화할 수 있다.

② I.의 제1항에서의 평가 임무의 일환으로, ARCOM의 (사법 기관에) 선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자동 수집 할 수 있다.

③ ARCOM은 서비스 제공자, 권리자, 보호 조치의 설계자에게 유효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II. ARCOM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자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ARCOM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 특히, 권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필요한 관련 정보 또는 통지에 대하여 권리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를 작성할 수 있다.

III. ARCOM은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18조의 보고서에 본 조에서 정한 임무에 대해 보고한다.

## 제3부속절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전속하는 저작물과 대상에 대한 보호 임무

### 제1관 가입자에 대한 권고 발송

제L.331-19조 ① ARCOM은 제L.331-2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의 조직에 의해 임명된, (사법 기관에) 선서를 마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의 신청을 관장한다.

- 적법하게 조직된 전문 권리 보호 단체
- 집중 관리 단체
- 국립 영화·애니메이션 센터

② 또한, ARCOM은 검사장이 당국에 전달한 정보를 기초로 하거나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서를 기초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ARCOM은 6개월 이상 지난 사실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기한은 검사장이 전달한 정보의 경우에 12개월이다.

제L.331-20조 ①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을 접수된 경우, ARCOM은 가입자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리고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접근제공자를 통하거나 보통우편으로, 제L.336-3조의 규정을 상기시키고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하며 제L.335-7조와 제L.335-7-1조의 적용으로 받게 되는 제재에 대해 경고하는 권고를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권고는 가입자를 위하여, 온라인 문화 콘텐츠의 적법 사용,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안 수단의 존재, 예술적 창작에 대한 반복 침해가 미치는 영향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화적 부문의 경제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② 전항의 권고 발송으로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이 반복되는 경우, 당국은 전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전 권고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권고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권고장을 내용증명하거나 또는 권고장을 제출한 날을 입증하는 적절한 기타의 방법을 부가해야 한다.

③ 본조에 근거하여 발송한 권고에는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 날과 시간을 기재한다. 당국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서 문제된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대상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당국은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우편 또는 전자 연락처를 표기한다.

제L.331-21조 ①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접근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그들의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에 제L.336-3조의 규정 및 ARCOM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하고 읽기 쉽게 기재한다. 또한 그가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그리고 제L.335-7-1조를 적용하여 받아야 할 민·형사적 제재를 명시한다.

② 그 밖에,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그들의 신규 가입자 및 그 가입계약을 갱신하는 자에



대하여, 온라인 상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적법 사용과 제L.336-3조에서 명시한 의무의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안 수단의 존재 및 예술적 창작에 대한 반복 침해가 미치는 영향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화적 부문의 경제적 위험성을 알린다.

제L.331-22조 ① ARCOM은 본관에서 정한 ARCOM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기술적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접근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당국에 접근 중단 조치를 개시한 날을 통지해야 한다. 당국은 접근 중단 기간이 종료하면 가입자에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한다.

제L.331-23조 ① ARCOM은 본관에서 정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자동화 처리 구축을 허가한다.

② 당국은 본관에서 정한 조치, 제L.335-7조 제5항에서 정한 통지와 사법 기관에 대한 소송 사건을 위한 전문 권리 보호 단체 및 집중 관리 단체의 정보 수단과 관련 소송 절차상의 모든 행위를 위하여 이러한 데이터 처리를 합목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본조의 적용 방법은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 국사원의 데크레로 정한다. 데크레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 등록된 데이터의 범주 및 보존 기간
- 해당 데이터의 통신을 받을 자격을 가진 수신자, 특히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접근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이해관계인이 당국에 정보,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제78-17호 법률에 따라 그들과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제L.331-24조 본관의 적용 요건은 국사원의 데크레로 정한다.

## 제2관 권리 침해의 유형화

제L.331-25조 I. 제L.331-12조의 제1항의 임무의 일환으로, ARCOM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의결의 대상되는 해당 서비스의 이름과 침해 행위의 목록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다.

II. ① 본조 I.에서 정한 목록에의 등록에 대한 사전 의결 절차의 개시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42-7조에서 정한 보고위원 또는 그의 보좌관에 의해 수행된다.

② 본 법의 제L.331-14조의 III에서 정한 (사법 기관에) 선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보고위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자격이 있다.

③ 앞서 언급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국에 조사 권한이 부여

된 해당 공무원은 조사 권한을 모든 유용한 자료를 참고하고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부여한 이용 허락
2.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게서 받은 통지 또는 해당 서비스에서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대상에 대한 부정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자료
3. 본법의 제L331-2조의 (사법 기관에) 선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④ 공무원이 확인한 사실은 보고위원회에게 제출되는 조서의 대상이 된다. 수집한 자료가 본조 I.에서 정한 목록에의 등록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보고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당국의 의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III. ① 당국은 문제가 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책임자를 공개 회의에 소환하여, 감시 결과의 발표시키고 정당함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이러한 소환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용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에 알린다. 이 모든 경우, 공개 회의일 최소 15일 전에 소환이 이루어진다.

② 이러한 공개 회의가 정해진 날에, 문제가 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책임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궐석은 절차 계속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IV. ① III.에서 정한 공개 회의가 종료된 후에, 당국은 I.에서 정한 목록에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등록을 의결한다. 당국은 보고 위원회의 참석 없이 의결한다.

② 대심 절차 이후 이루어진,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과 결과적으로, I.에서 정한 목록에 등록하기로 결정하는 당국의 의결은 정당하다. 당국은 앞선 I.에서 정한 목록에의 등록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다.

③ 의결은 III.의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당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전자적 수단을 통해 문제되는 서비스에 통지한다.

④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는 언제든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존중을 증명하는 경우에 그 즉시 당국에 I.에서 정한 목록에서의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국은 III.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 회의를 개최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결정을 통해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판단한다.

V. 제L331-12조에서 정한 자발적 동의에 서명한 자는 I.에서 정한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에 등록된 모든 기간 동안, 광고주, 그의 수임인, 조세일반법전 제299조 II.의 제2호에서 정한 서비스, 본조 I.에서의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와 영업 관계에 있는 기타의 모든 자는 특히 광고 게재 또는 대금지급의 수단 제공에 대하여, 당국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적어

도 1년에 1회 이러한 관계의 존재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상법전 제L.232-1조의 II.에서 정한 경영관리 보고서에 이를 기재한다.

VI. 당국이 본조 I. 에서 정한 목록에 등록하는 것은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또는 법적 수단에 필요한 예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L.331-26조 본관의 적용 요건은 국사원의 데크레로 정한다.

### 제3관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대책

제L.331-27조 I. ① 제L.336-2조의 적용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한 기판력 있는 사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 ARCOM은 이러한 판단에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법원이 명령한 조치를 위해 남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러한 판단에서 언급된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모든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I.의 적용을 위하여, ARCOM은 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② 또한, 당국은 동일한 요건에서 검색엔진, 디렉토리 또는 기타 색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이러한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전자 우편 주소의 색인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L.336-2조의 사법적 판단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국은 합의 형식을 채택하여 권리자와 온라인에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에 대한 침해를 막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합의하도록 한다. 특히 합의에서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모든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존재에 대하여 당사자의 상호 정보 조건을 정한다. 합의 당사자이자, 온라인에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에 대한 침해를 막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II. I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ARCOM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법 당국은 긴급 심리 또는 신청으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을 중단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제L.336-2조에서 정한 청구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제L.331-28조 ① ARCOM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을 파악하고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 부문에서의 규제와 감시 임무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ARCOM은 제L.331-5조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의 결과로 상호 호환성을 상실하거나 호환불능으로 되거나, 특정한 저작물 기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실연, 음반, 비디오,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언론출판물의 저작권접권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과 별개의 추가적인 저작물의 이용 제한이 야기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2. ARCOM은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실행하여, 다음에 규정된 수익자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 제L.122-5조의 제2호, 제3호의 e,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 제L.211-3조의 제2호, 제3호의 e, 제6호, 제7호, 제8호.
- 제L.342-3조의 제2호, 제4호, 제4호의 乙, 제5호, 제6호.
- 그리고 제L.331-4조.

② 또한, ARCOM은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실행하여, 문화유산법전 제L.132-4조의 제2호, 제L.132-5조, 제L.132-6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수집 보존, 조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의 예외에 대한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③ 본 법전 제L.331-7조, 제L.331-10조, 제L.331-33조, 제L.331-35조 및 제L.331-37조에서 정한 조건 하에, 당국은 앞선 예외의 행사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보호받는 대상 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중 송신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제공하는 성능에 따라, 사적 목적의 복제를 위한 예외의 범위 내에서 허락된 최소 복제 부수를 정한다.

**제L.331-29조** ① 모든 소프트웨어 편집자, 모든 기술적 시스템의 제작자 및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상호운용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의 접근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들은 ARCOM에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서비스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의 보장을 구하고, 기술적 조치를 한 권리자에게서 이러한 상호운용성에 필수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당국은 그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개월의 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운용성에 필수적인 정보는 기술문서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용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4조에서 의미하는 개방형 표준(오픈 포맷)에 포함되는 기술 장치가, 기술 조치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및 대상에 그리고 처음 정해진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대상의 이용조건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형태로 첨부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③ 기술적 조치를 한 권리자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문서가 앞서 말한 기술조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개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그의 소프트웨어의 기술문서와 소스 코드의 공개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당국은 당사자들이 제안한,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게 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승인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한 후, 당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판단을 거쳐 신청 거절을 결정하거나 신청인이 상호운용성에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을 구할 수 있는 조건,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조건 및 보호받는 콘텐츠의 사용 조건 및 접근 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경우 벌금을 조건으로 하여 명령할 수 있다. 당국이 정하는 벌금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⑤ 당국은 그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당국이 승인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벌금형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각 벌금형은 이해관계자에게 야기한 손해의 크기, 제재를 받는 조직 또는 기업의 현황 및 상호운용성에 반하는 행위의 반복가능성에 비례한다. 벌금형은 개별적이고 정당

한 방법으로 정해진다. 벌금의 상한액은 기업의 경우 저작물의 상호운용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영업기간 직전 영업기간 중 세금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의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1,500,000유로로 한다.

⑥ 당국의 결정은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당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이들은 파리 항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의 제기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킨다.

⑦ ARCOM의 의장은 기술적 조치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쟁당국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소제기는 상법전 제L.464-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긴급절차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ARCOM의 의장은 그의 권한과 관련된 기타 모든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경쟁당국은 ARCOM의 권한영역 내에서 제기된 모든 소송을 ARCOM에 통지한다. 경쟁당국은 본 법전 제L.331-5조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 부문에서 제소된 행위에 대한 그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L.331-30조 제L.331-28조 제2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의 모든 수익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인가된 모든 법인은 제L.331-5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앞선 예외규정에 따른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ARCOM에 제소할 수 있다.

제L.331-31조 I. 장애인을 위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대상을 복제하거나 공연하는 제L.122-5조의 제7호의 법인 및 공공에 개방된 시설은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출력된 텍스트의 전송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ARCOM에 제소할 수 있다.

II.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장애의 상태에 있는 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무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국은 발행인,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리고 제L.122-5조 제7호의 법인 및 시설에서 모든 유용한 문서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L.331-32조 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ARCOM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거나 돕는다. ARCOM이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는 집행력을 가진다. 조서는 사법 기관의 서기관의 보관 대상이 된다.

② 제소한 때로부터 2개월의 기한 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국은 이해관계자에게 그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판단을 거쳐 신청 기각을 결정하거나 예외규정의 유효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정하는 명령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경우 벌금을 조건으로 한다. 당국이 정하는 벌금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제소된 때로부터 4개월의 기한을 가지며, 2개월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이러한 결정 및 화해조서는 법률이 보호하는 비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결정 및 화해조서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이들은 파리 항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의 제기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킨다.

제L.331-33조 ① 제L.331-29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 1인은 기술적 조치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모

든 문제에 대하여 ARCOM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당국은 그의 자문 범위에 한하여 제 L.331-29조에서 정한 기술문서를 구성하는 자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또한 제L.331-28조 제2호의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대한 수익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인가된 법인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ARCOM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L.331-34조** 본 부속절의 적용 요건은 국사원의 데크레로 정한다. 국사원의 데크레는 제L.331-10 조에서 정한 저작물, 비디오그램, 프로그램, 음반 또는 언론 출판물의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 방법을 규정한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DLR5L15N42194?etape=15-PROM>
- <https://www.lexisveille.fr/lutte-contre-le-piratage-audiovisuel-le-csa-et-lhadopi-fusionnent-pour-devenir-larcom>
-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fusion-du-csa-et-de-hapodi-l-arcom-aura-t-elle-moyens-de-ses-ambitions>